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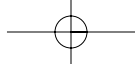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화평의 법으로서 교회법

1. 교회와 법

교회법¹⁾이 과연 가능한가, 이 주제는 시대마다 첨예한 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라이프찌히 법학부의 법학자로서 독일법과 교회법을 가르친 Rudolph Soehm(1841-1917)이 주저 〈Kirchenrecht:교회법, 1892〉 제1권에서 설파한 핵심논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나 법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상충한다’(Das Kirchenrecht steht mit dem Wesen der Kirche in Widerspruech; Das Wesen der Kirche ist geistlich, das Wesen des Rechts ist weltlich). 그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와 법을 서로 대조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 신약 교회는 모든 시대 교회의 모델로서 형식과 법과 조직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 자신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의 성령의 은사로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Geistkirche, Liebeskirche)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일 세기 말에 종식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정을 세우므로 ‘법의 교회’(Rechtskirche)가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1) 본고에서 교회법, 교회정치, 교회질서라는 말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법의 경우에는 이신칭의를 통한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교회정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질서는 구원의 질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화평을 위한 질서를 뜻한다. 교회헌법이라는 말은 미국의 영향으로 서 이 용어 안에 신조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고신교회헌법을 보면 교리표준으로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고 관리표준으로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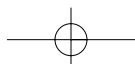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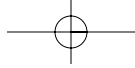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른 질서와 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가 축소될 수 없다(고전 14:40, 33. 골 2:5). 바울은 때로 명령의 형태로 교회에 지시할 때가 있다: παραγγελία(살전 4:2; 딤후전 1:18). διατάσσω(고전 7:17; 11:34; 16:1; 딤후전 1:5). 또 간접 명령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전 14:13; 28, 30, 35, 37). 상호 및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규정도 볼 수 있다(롬 15:14; 골 3:16; 살전 4:18; 살전 5:11, 14; 갈 6:1-2).²⁾

장로교에서 성경과 신앙고백과 교회정치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틴 부셔와 요한 칼빈 등 개혁가들은 교회정치형태와 실재를 다룰 때 성경주해에서 출발하였고(예를 들어서 기독교강요 4:4:1, 4:5:10를 참고하라) 나아가 교회정치의 요소를 그들이 작성한 신앙고백서에서도 언급하였다(벨기에신앙고백서의 경우 27-32조항에서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고백하고 있다). 즉 이들은 신앙고백이 교회정치의 내용을 주도하고, 교회정치는 교회를 신앙고백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교회론에서 출발하여 교회법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장로교에서 첫째 정치원리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칼빈이 주도하여 작성한 1541년의 <제네바교회정치>는 교회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그 서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행정관들, 소의회와 대의회는 나팔 소리와 대형시계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의 오랜 전통을 따라 시민들과 함께 모여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젊은이들을 신실하게 교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돌보기 위해서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생활의 정확한 질서와 규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러한 법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계

2) H.N.Ridderbos, "Kerkelijke orde en kerkelijk recht in de brieven van Paulus" In: Auditu Verbi (Amsterdam 1965), pp. 197-198.





층이 자신의 맡은 직분의 의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영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되어 준수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교회 정치를 따르고 지킬 것을 제정하고 명령하였다”³⁾

교회정치에서 성경에 기반을 두는 칼빈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 (Ius divinum) 사상은 프랑스 교회, 네덜란드 교회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가 따르게 되고, 마침내 이 점은 모든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고백의 사항으로 채택되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갈리안 신앙고백서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칼빈의 표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대로 영적으로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0조 교회의 영적 통치)⁴⁾

2. 교회법의 목적: 화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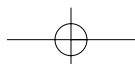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그렇다면 교회에 법/질서/정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때 교회법의 목적은 화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3절과 40절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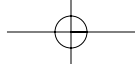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

3) 원본은 P.E. Hughes가 번역한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Grand Rapids:Eerdmans, 1966)에서 볼 수 있다. 일부는 다음의 책에서 볼 수 있다: D.W.Hall & J.H.Hall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Grand Rapids:Eerdmans, 1994), pp.140-141.

4) 갈리안신앙고백서 29조 역시 동일하다.





고린도교회는 특히 예배에서 무질서하였다. 교회에 품위와 질서를 요구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οἰκοδομεω-3, 5, 12, 17, 26절을 참고하라),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 이후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40절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질서를 무시하는 재세례파의 신령주의 성격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위한 질서, 규정을 위한 규정, 법을 위한 법을 주장하는 문자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교회법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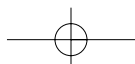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교회법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에 기인한다. 에베소서 2:14-17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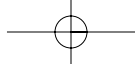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아가며 또 세워져간다고 할 수 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토대로 주신 화평에 참여하는 교제이다. 교회법은 성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칼빈 등 개혁가들은 당시 교회개혁이 교회를 '세우는 것'(οἰκοδομεω)으로 보면서 여기에 교회법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⁵⁾

이 점에서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대조가 된다. 즉 세상의 법과 질서 역시 '의'(정의: Ius)를 말하지만 이는 정죄와 보응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5) W. van 't Spijker, "Kerkrecht en Gemeenteopbouw" In: *Vormingen en Verdieping* (Amsterdam: Buijten & Schipperij,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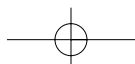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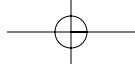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법’ (ius; right)은 법 이전에 ‘권리’를 가리키는데 즉 법적 관계, 법적 질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법’ (권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 (義)라는 ‘특별 은혜’에서 나온 ‘법’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법은 의인으로서의 신자와 교회의 권리를 가리키며, 은혜로 회복된 의/화평의 권리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법적 지위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은 법이나 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목사가 교회법을 목회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평의 복음을 교회에 설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군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후 3장). 교회법이 하나님과의 화평, 성도 상호간의 화평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화평의 복음을 설교하는 강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시고 선사하시는 구원은 결국 설교되는 화평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이며 복음에 약속된 것이며 교회에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에서 결코 이혼을 조언할 수 없다. 이혼은 화평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교회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 원망이 나타났을 때 일곱 사람을 세워서 다시 화평을 이룩하는 것도 직분을 통한 질서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직분자의 봉사는 바로 화평과 무관하지 않다.

이같이 화평은 교회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에 질서가 있게 하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과의 화평, 나아가 성도 상호간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정의 진술이 타당할 때 교인과 교회는 거기서 안정과 화평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법 조항을 해석할 때 문학적 해석학, 성경 해석학, 역사적 해석





학, 구조적 해석학, 교의적 해석학 외에 교회법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론적 해석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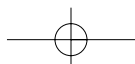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3. 화평의 법으로서 적용

그렇다면 교회정치의 각 조항이 어떻게 화평의 법으로 실제로 기능할 수 있을까?

첫째 권징을 살펴보자.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거룩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권징 시행은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성례는 화평의 표로서 화평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 사이에 놓여 있는 법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성찬은 화평의 확증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가 함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사하고 약속하신 화평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한 상에 앉기 때문이다.

셋째 직분자의 심방 역시 그 성도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을 집으로 가져가 권면과 위로,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 전하여 그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화평을 누리게 한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성도를 집사나 권사를 통하여 돕는 것도 역시 화평의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가 당한 난관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의 화평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단 안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화평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찰회를 통하여 개체교회를 시찰하는 것 역시 각 개체교회의 화평과 그 교회 지체들의 화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시찰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노회와 총회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교회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 온갖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교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사하시고 복음에서 약속한 화평과 관련이 있으며,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세상에서 변호사는 빠져나갈 법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인간 애를 쓰지만 교회는 더욱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 Bouwman, H., *Gereformeerd Kerkrecht I*, Kampen, 1928.
- Bronkhorst, A.J., *Schrift en kerkorde. Een bijdrage tot het onderzoek naar de mogelijkheid van een Schriftuurlijke Kerkorde*, Utrecht 1947. Diss.
- Hall, D.W., & Hall, J.H.,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1994.
- Hovius, J., *Het verband tussen onze belijdenis en onze Kerkorde*, Sneek, 1962.
- Kamphuis, J., *Verkenning III: kerk en kerkrecht*, Goes, 1966.
- van 't Spijker, W en van Drimmelen, L.C (red.),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Kampen, 1988.
- van 't Spijker, W., Balke, W., Exalto, K., van Driel, L., red., *De Kerk*, Kampen, 1990.
- van 't Spijker, W., "Kerkrecht en Gemeenteopbouw" In: *Vormingen en Verdieping*, Amsterdam, 1995.
- Trimp, C., *Ministerium: een introductie in de reformatorische leer van het ambt*, Groningen, 1982.